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대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5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강대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이병도, 이경선,
강동길, 이영실, 김재형,
김화숙, 노승재, 김정태
의원 (9명)

1. 제안 이유

-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있어,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선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도록 함(안 제24조 단서 신설).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 및 기준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,
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